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코리아외화채권증권자투자신탁(UH)[채권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(생략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(생략)	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<u>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23조(판매가격)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4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③(생략)	제23조(판매가격)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4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3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4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	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3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4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

	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7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8영업일</u>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(생략)	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7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8영업일</u>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26조(환매연기) ① ~ ④(생략) 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제3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제4영업일</u>)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(생략)	제26조(환매연기) ① ~ ④(현행과 같음) 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3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4영업일</u>)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④(생략)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제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2. (생략) ⑥(생략)	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④(현행과 같음)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⑥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(생략) 1. ~ 2.(생략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	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(현행과 같음) 1. ~ 2.(현행과 같음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행령</u>

	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~ ④(생략)	<u>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~ ④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~ 7. (생략) 8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	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 3. ~ 7. (현행과 같음) 8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

	10. (생 략) ② ~ ⑩ (생 략)	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⑩ (현행과 같음)
-	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8월 29일</u> <u>부터 시행한다.</u>